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14

발의연월일: 2025. 1. 7.

발 의 자:이종배·김성원·성일종

박덕흠 • 이종욱 • 김예지

정동만 · 김위상 · 송석준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2차 가해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성폭력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 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제15조"를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4 조의3 및 제15조"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성폭력범죄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311조의 죄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	제2조(정의) ①		
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5		
등)부터 <u>제15조</u> (미수범)까지	<u>제13</u> 조의2, 제14조, 제 <u>1</u>		
의 죄	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3조의2(피해자에 대한 명예훼		
	손 등) 성폭력범죄의 피해 사		
	실에 관하여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311조의 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		
	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u>다.</u>		